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문화체육관광부 (게임콘텐츠산업과)
연 월 일	2020. 7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, 복합 유통게임제공업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다양하고 가족 친화적인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, 교육이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중복 부과되어 이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게임물 관련사업자 온라인 교육 추가(안 제5조)

- 1) 현행 집합교육방식 외에도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

나.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면적비율 조정(안 별표4 제2호 가목 1))

- 1)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요건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(피시방)의 면적비율을 50%에서 20%로 조정

다. 교육이수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삭제(안 별표5 제2호 라목 1))

- 1) 교육이수 의무 위반 시 함께 부과되는 과태료와 행정처분 중 행정 처분을 삭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협회”를 “위원회, 협회”로, “교육에 참석”을 “교육을 이수”로 한다.

②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은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별표 4 제2호가목1) 중 “50퍼센트”를 “20퍼센트”로 한다.

별표 5 제2호라목1)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 ② 영 제2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<u>협회</u>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<u>교육에 참석</u>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	제5조(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은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위원회, 협회</u> ----- ----- <u>교육을 이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[별표4] 시설기준(제20조 관련) 1. (생략) 2. 복합유통게임제공업(추가사항) 가)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1) 전체 영업면적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이 <u>50퍼센트</u> 이상이어야 한다.	[별표4] 시설기준(제20조 관련) 1. (생략) 2. 복합유통게임제공업(추가사항) 가)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1) ----- ----- ----- <u>20퍼</u> <u>센트</u> -----

[별표5]

행정처분의 기준(제26조제1항 관련)

1. (생략)

2. 개별기준

위 반 사 항	근거법령	행정처분기준			
		1차	2차	3차	4차
		위반	위반	위반	위반
라.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	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				
1)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		경고	영업정지 10일	영업정지 20일	영업정지 1월
2)~8) (생략)					

[별표5]

행정처분의 기준(제26조제1항 관련)

1. (현행과 같음)

2. 개별기준

위 반 사 항	근거법령	행정처분기준			
		1차	2차	3차	4차
		위반	위반	위반	위반
라.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	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				
1) (삭제)		(	삭	제	)
2)~8) (현행과 같음)					